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이었던 평창군 소속 및 평창군 의회 소속 공무원의 윤리위원회 관할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정 범위 변경(안 제3조제1항)

- (1) 재산 공개 대상자에 대한 심사 결정권 삭제
- (2)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정 범위 내의 공직자로 한정

나.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변경(안 제3조제2항)

- (1)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평창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 (2)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평창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 평창군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평창군 의회의원 및 평창군의 4급공무

원은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심사 관할이 변경됨.

다.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차보고서로 의회 제출(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및구성에관한조례”를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처리

제3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창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평창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에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p> <p><u>1. 법 제10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u></p> <p>2. ~ 4.(생략)</p> <p>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p> <p><u>1. 평창군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u></p> <p><u>2. 평창군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u></p> <p><신설></p>	<p>제3조(기능) ①.....</p> <p>.....</p> <p><u>1. 법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처리</u></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p> <p>.....</p> <p><u>1. 평창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u></p> <p><u>2. 평창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u></p> <p><u>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관 계 법 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1.11.30, 1993.6.11, 1994.12.31, 1997.12.13, 2006.12.28>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국회 등에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에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①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